

[별첨 1]

2026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운동 및 홍보 세부기준(안)

2026년 10월 13일

우체국시설관리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

제1조(목적)

본 기준은 2026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,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조직적 지원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형을 방지하며,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거운동의 주체)

-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로 등록된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.
- ② 노동조합,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, 일반 근로자 등 제3자는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 ③ 후보자는 제3자에게 선거운동을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없으며, 제3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3자가 후보자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여 책임을 판단한다.

제3조(선거운동의 방법)

-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오프라인에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는 방식과 우체국시설관리단 공식 현장관리업무시스템인 포마ON 공식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식에 한하여 허용한다.
-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경력, 공약 및 출마 취지 등을 홍보할 수 있다.
- ③ 후보자는 개인 비용으로 제작한 명함, 홍보물 및 인쇄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. 다만,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예산 및 조직을 이용하여 제작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온라인 선거운동은 포마ON 공식 게시판에 후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에 한하여 허용한다.
- ⑤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한 개별 온라인 선거운동은 금지한다.
 1. 개인 또는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
 2. 카카오톡 개인대화 및 단체대화방을 이용한 선거운동
 3. 네이버 밴드,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선거운동
 4. SNS 및 기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
 5. 제3자를 통한 온라인 홍보물 전달 및 배포

-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는 공식 선거홍보는 제5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조직적 선거운동 금지)

- ① 노동조합을 포함한 각종 단체 및 조직은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·추천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후보자는 노동조합의 조직, 예산, 인력 또는 내부 연락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.
 - 1. 노동조합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추천
 - 2. 노동조합 밴드, 카페 및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한 후보자 홍보
 - 3.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, 전화번호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이용한 선거운동
 - 4. 노동조합의 예산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
 - 5. 노동조합 임원 또는 간부가 직책이나 조직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
 - 6. 후보자와 공모하여 제3자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④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식 선거홍보는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제5조(공식 선거홍보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주요 경력, 출마 취지 및 공약 등을 포함한 공식 선거홍보를 총 3회 실시한다.
- ③ 공식 선거홍보는 본사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을 활용하여 발송한다.
- ④ 공식 홍보에 포함되는 후보자별 내용의 분량, 형식 및 발송 횟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.
- ⑤ 공식 선거홍보의 발송 시기와 세부 운영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- ⑥ 공식 선거홍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, 후보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이 별도로 발송하는 홍보 메시지로 대체할 수 없다.

제6조(제3자의 독자적인 행위와 후보자의 책임)

- ① 후보자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제3자가 독자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홍보한 경우, 그 사실만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② 후보자가 제3자에게 선거운동을 요청·지시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.
- ③ 후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거나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.
- ④ 후보자의 위반행위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7조(선거운동 기간)

- ① 선거운동 기간은 2026년 10월 30일(금)부터 2026년 11월 6일(금)까지로 한다.
- ② 후보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- ③ 선거운동 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운 선거홍보 게시글 작성, 홍보물 배포 및 기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선거운동 기간 종료 직전 또는 투표기간 중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할 수 있다.
-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식적인 투표 안내 및 선거 관련 공지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제8조(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)

- ① 선거운동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, 발생 경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다.
- ③ 후보자의 위반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.
 - 1.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
 - 2. 고의성 및 반복성
 - 3. 후보자의 직접 관여 여부
 - 4. 제3자와의 공모 또는 지시 여부
 - 5.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
 - 6. 제출된 증빙자료 및 후보자의 소명 내용
- ⑤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
제9조(위반행위에 대한 조치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심의할 수 있다.
 - 1.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
 - 2. 위반 홍보물 또는 게시글의 삭제 요청
 - 3. 위반행위의 중단 및 시정 요구
 - 4.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선거운동 제한
- ② 후보자가 고의적·반복적으로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거나 노동조합 등 제3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심의할 수 있다.
- ③ 후보자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 중대한 조치는 관련 법령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등 상위 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후보자의 소명권을 보장하고,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본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 기준과의 관계)

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당시 적용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한다.

제3조(상위 규정과의 관계)

본 기준은 관계 법령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등 상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.